

꼭 지켜주세요!

- 현장실습생 실무교육 투입 전 입문교육 필수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직무 소개,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 현장실습 시간 준수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단, 당사자 서면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 연장실습 가능)
- 야간실습 및 휴일 실습 불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실습 불가, 주 2회 휴일 보장

#### 기업현장교사 자격 및 역할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아래 자격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훈련 지도 유경험자
  -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경력자
  -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현장실습생 수에 따라 30,000원~35,000원의 실습지도 수당을 최대 210만원 한도로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http://www.kosaf.go.kr))에서 기업현장교사가 직접 신청



2023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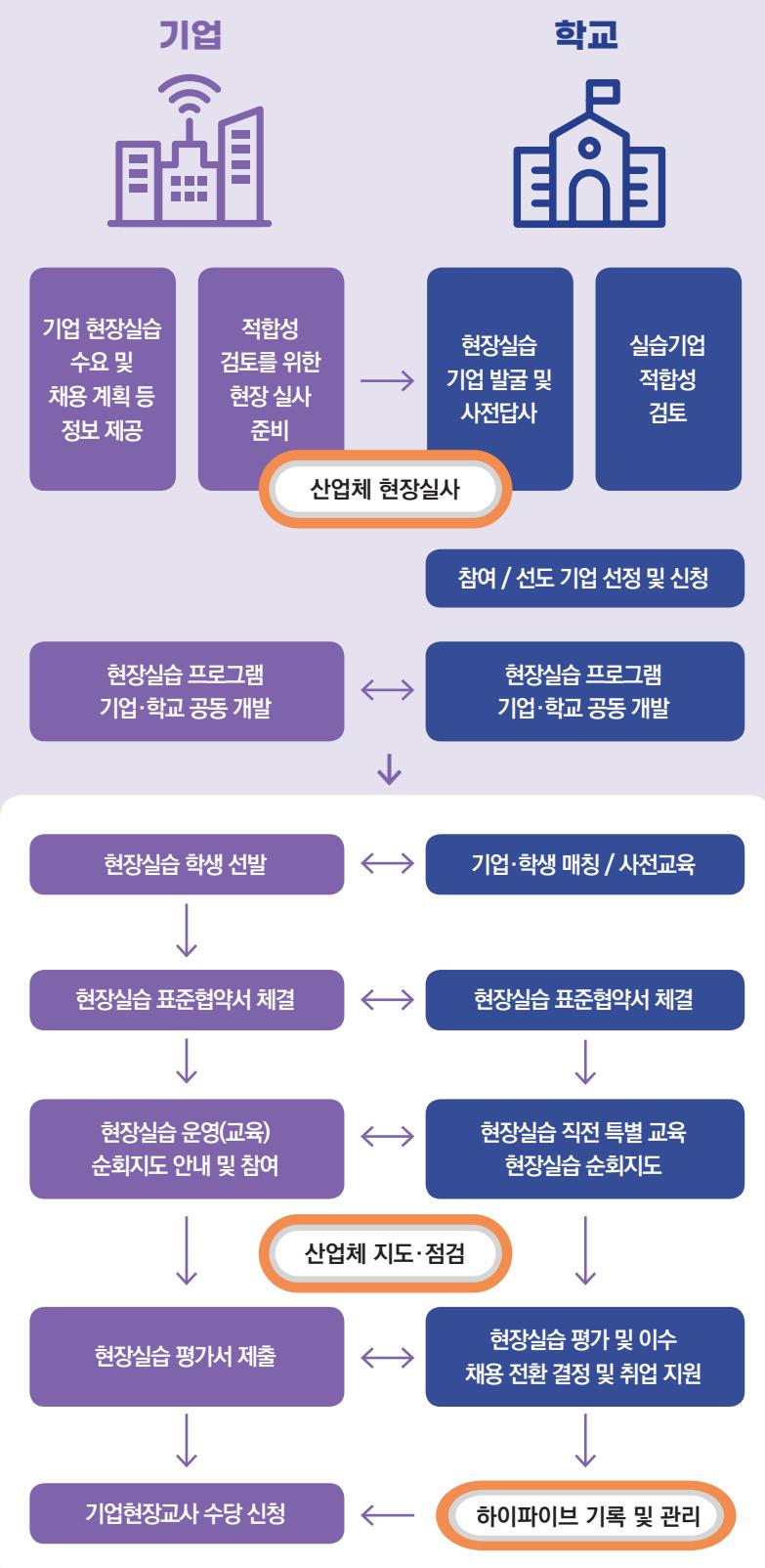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제도 안내

기업용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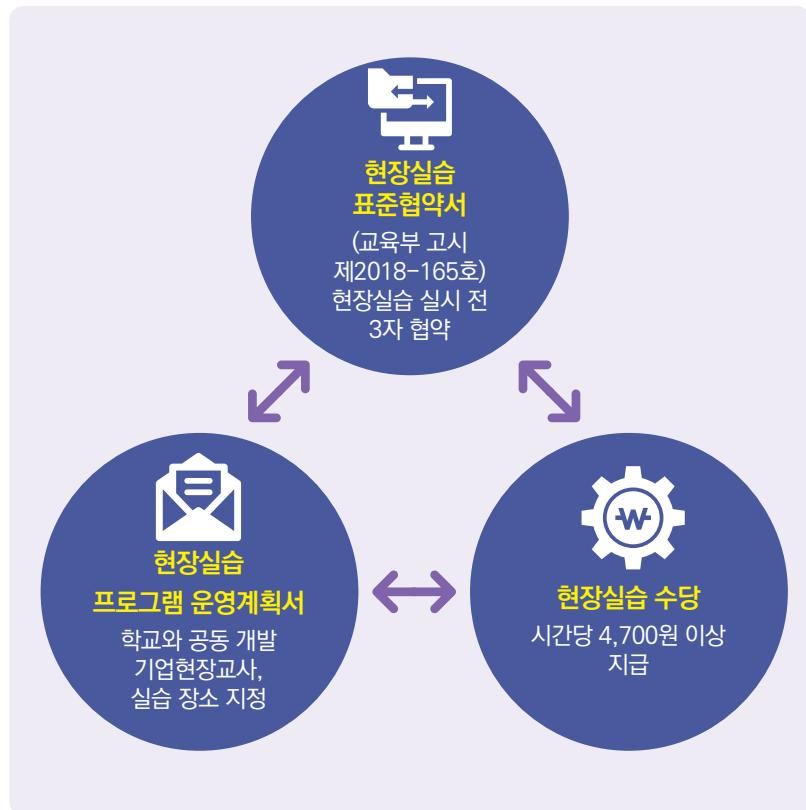


##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입니다

## 현장실습 전 확인해주세요!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에게 5만원 이내 수당이 지급 됩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지원 정책

### 현장실습 참여 기업

- **현장실습 비용 세액공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 식비, 교재비, 재료비의 세액공제 국세청 클센터 (126)
- **현장실습 기업 현장 교육 지원금 지원**  
기업 현장교사에게 1인당 최대 210만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담당 (1800-0499)
- **산재 예방시설 용자 지원사업**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등 산업체에 예방시설 설치비 장기, 저리 조건 응자 지원(사업장당 10억원 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 현장실습 선도 기업

- **위험성 평가 인센티브**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산재보험료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 비율 100% 적용, 보증료를 0.2%p 감면
  - 인정사업장은 현장실습 현장실사 미실시 및 선도기업 지정 가능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1644-4544)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원사업 가점 부여**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R&D, 수출 등)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042-481-1664)
- **시중은행 기업 대출금리 우대**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금리 우대(0.25~1.3%) 등 은행별 고객센터
- **병역지정업체 가산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선도기업 선정 시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5점 또는 7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종합상담센터(1357)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우대**  
보증료율 0.1%p 차감 적용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  
매출채권 기입 시 산출보험료의 5% 할인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 인증평가 가점 부여**  
'선취업-후 학습기업'분야 인증 심사 시, 선도기업 가점 5점 부여 (민간부문) 사업공고 내 문의처 참고 (공공부문)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 연구센터(044-415-3941)
-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컨설팅 등 수수료 우대지원**  
4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053-430-4684)
- **기술보증기금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5점 가점 부여

※ 기업지원정책의 자세한 사항은 큐알코드로 고를만집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고졸만집·소통·홍보실·카드뉴스·웹툰·영상·간행물·간행물)



##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주세요! (적용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함("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추가 준용사항

- 일부개정(23.3.30.) 사항 - 「근로기준법」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추가 준용됨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 일부개정(23.3.30.) 사항 -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사)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자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본문	제36조 (금품청산)	현장실습생의 실습료 또는 사망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할 의무	사망 또는 현장실습 종료와 같은 현장실습 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현장실습 지원금 등을 청산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음.	
본문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현장실습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실습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됨	
본문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조사 및 기타 조치 의무와 괴롭힘 조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현장실습 산업체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 확인 전 후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본문	제77조 (기능습득자의 보호)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훈련하거나 관계없는 업무 종사 금지	도제·양성공·수습 등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열악한 실습조건으로 사용하면서 훈련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가사 또는 잡무 등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함.	
벌칙	제107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근로, 폭행, 중간착취 발생시 위반자 제재	제7조, 제8조, 제9조 위반 시 적용
벌칙	제109조제1항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금지 위반, 강제근로 실시 및 금품청산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시 제재	제65조 및 제72조 위반 시 적용 제36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적용
벌칙	제110조제1호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공민권 행사 미보장 시 제재	제54조 위반 시 적용 제10조 위반 시 적용
벌칙	제114조제1호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미보장 및 기능습득자 보호 위반시 제재	제73조 위반 시 적용 제77조 위반 시 적용
벌칙	제116조제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일정 범위 내 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의 제재	제76조의2 위반 시 적용
벌칙	제116조제2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괴롭힘 조사실시 의무제2항, 괴롭힘 확인 시 조치 의무제5항 및 조사 관여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제7항) 위반 시 제재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 시 적용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용 조항 해설

구분	준용 조문	요약	의미·해석	비고
벌칙	제26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실습 7시간(연장 등외시 8시간) 초과 실습 또는 정해진 시간(야간실습 등) 의 실습 제재	<과태료 부가 권한 위임> 시·도교육감 ▪ 제27조제1항제1호(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 현장실습 기간,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이 변경될 경우 현장실습 협약서 사항 미준수 시 제재)
과태료	제27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 표준협약서 미사용에 따른 과태료 ▪ 제27조제1항제2호(기본부터 다목 (현장실습 기간, 방법, 담당자 배치, 내용의 변경 철회)에 따른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 ▪ 제27조제1항제2호(현장실습 수당) 및 마목 (안전·보건상의 조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 제27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